

2020년 6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(044-201-2351), 사무관 남기현(2352) / 제공일: 6월 10일(총 8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등 초지제도 개선

- 농식품부, 2020. 6. 11. 초지법 개정 시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추진경과

- 2019. 12. 10. 초지법 개정·공포(황주홍, 오영훈 의원 발의)
- 2020. 6. 9.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
- 2020. 6. 11. 개정 초지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 시행

◆ 개정 시행되는 초지법 주요내용

- ①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* (현행) 일시 납부 → (개선) 허가 전 30%를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
- ② 초지의 난개발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규정 악용 방지를 위해 초지 전용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
* 용도변경으로 인해 대체초지조성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차액 납부
- ③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'허가·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' 및 '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' 추가
- ④ 매년 실시하는 초지 실태조사 기준일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,* 초지의 불법사용 방지 및 초지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
* 실태조사시 초지가 월동채소 재배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 조사 등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2020년 6월 11일자로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초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지난해 개정·공포된 초지법(법률 제16790호, 2019. 12. 10. 공포, 2020. 6. 11. 시행)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, 6.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

-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으나, 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.

* 대체초지조성비 :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(14,765천원/ha)

-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,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초지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%를 납부하고,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.

- 이번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

-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한 후 곧바로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으나, 앞으로는 초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초 용도와 달리 변경하여 대체 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- 이는 처음에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, 대체초지 조성비가 감면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
③ 초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 추가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'허가·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' 및 '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'를 추가함으로써
- 지자체장이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,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 변경

- 초지의 이용현황,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“초지관리 실태조사” 기준일이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되었다.

- 이는 일부 지역에서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,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기준일을 변경하게 되었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'19년 현재 32천ha에 불과하고, 매년 약 200ha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,
 -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, 원상회복명령 대상 추가, 실태조사 기준일 조정 등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참고 1

초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

-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제도 도입(법 23조제12항·제13항, 영 제17조, 제18조, 규칙 제15조의7 신설)
 - (대상) 대체초지조성비가 초지전용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
 - (방법)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 분할납부
 - 전체금액의 30%는 허가 전에 미리 납부하고, 잔액에 대해 균등 분할 납부
-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(법 제23조의3 신설, 영 제20조, 제21조, 규칙 제15조의8 신설)
 - (승인기간) 초지전용 후 5년 이내
- 원상회복 명령대상에 초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경우 등 추가(법 제27조제1항 개정)
 - 초지전용허가(신고)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,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
-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자 변경(규칙 제16조제1항 개정)
 - (기준일) 매년 7월 1일 → 매년 9월 30일
 - 초지를 월동채소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조사 목적

참고 2

초지법령 개정 조문(2020. 6. 11. 시행)

초지법	초지법 시행령	초지법 시행규칙
<p>제23조(초지의 전용 등) ⑫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) ① 법 제23조제1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.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등전에 납부하게 하고, 그 납은 금액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허가등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(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자를 포함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제15조의7(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)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.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</p>
<p>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8조(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해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(이하 “보증서등”이라 한다)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</p>	<p>제15조의8(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.</p>

초지법	초지법 시행령	초지법 시행규칙
	<p>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해야 한다.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,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② 기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가 분할 납부해야 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,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.</p> <p>③ 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</p>	
<p>제23조의3(용도변경의 승인)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.</p>	<p>제20조(용도변경의 승인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5년을 말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.</p> <p>제21조(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할 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승인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.</p> <p>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</p>	<p>제15조의9(용도변경의 승인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 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서 2.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.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.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3.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

초지법	초지법 시행령	초지법 시행규칙
	<p>대체초지조성비는 그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4.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</p> <p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,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</p>
<p>제24조(초지관리 실태조사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	<p>제16조(초지관리실태 조사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</p>
<p>제27조(원상회복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.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.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.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.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		